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1327호
- 다. 제출일자: 2020. 2. 5.
- 라. 회부일자: 2020. 2. 12.

2. 제 안 사 유

-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에 지원해 온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지원이 2019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보상금 지원을 위해 운영했던 수도권 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을 폐지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조의2, 제1조의3, 제3장(제9조부터 제17조까지)).
- 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승계하고, 2019년도 결산잔액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귀속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12.19.~2020. 1. 8.) 결과: 의견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에 지원해 온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지원이 2019년 11월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위해 운영했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현황

- 현행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이하 “주민지원계정”)”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이하 “환경개선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환경개선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기금에 추가로 설치되었음.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현행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로 개정함 있음.

조례명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개정일	1996.8.10. 제정	2012.7.30. 개정
기금명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계정명	(계정 없음)	- 주민지원계정 - 환경개선계정

- “환경개선계정”은 경인아라뱃길, 제2외곽순환도로, 청라지구 주변도로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을 수입으로 하여 2013년 200억원을 지원한 이래 2019년까지 총 1,659억원의 보상금을 인천시에 지급한 바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의 합의¹⁾에 따라 2019년 11월 이후 지원이 종료되었음.

다만, 현재 동 계정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잔액(예치금)이 3억 5천5백만원²⁾ 남아 있는 상황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기금의 재원과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계	'13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1,659	200	140	609	200	285	225
경인아라뱃길	1,025	200	140	200	200	285	-
제2외곽순환도로	409	-	-	409	-	-	-
청라지구 주변도로	225	-	-	-	-	-	225

다.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지원 종료에 따른 환경개선 계정을 폐지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예치금을 일반회계로 승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음.
- 다만, 하나의 기금에 둘 이상의 계정을 두는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대외협력기금 등과 같이 각 계정들의

1)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2015년 6월 28일)

2) 2019년 회계연도 결산잔액: 354,666,740원(2020년 1월 31일 현재)

재원과 목적이 유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012년 조례 개정 당시 재원과 설치 목적이 확연히 다른 주민지원계정과 환경개선계정을 하나의 기금에 묶은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의한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환경개선계정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단순히 삭제 또는 변경할 것이 아니라, 현행 조례를 환경개선계정 추가 설치 이전의 조례 내용 및 형식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둘 이상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기금 현황>

기금명	계정명	설치목적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
	자활	수급자 및 저소득시민 자립기반조성 사업 지원
	주거지원	저소득시민의 주거 안정 도모
재난관리기금	재난	재난의 사전예방과 발생시 신속한 복구
	구호	재해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	타 지자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국제협력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